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719호, **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6년 5월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25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으로 인한 변경

[2026년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]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	
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합 계	285,101	364,514	79,413	합 계	285,101	364,514	79,413	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82,662	182,662	-	사업비	기금 융자금	180,000	180,00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2,021	2,021	-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	96,460	96,460	-
				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54	254	-
전 년 도 예 치 금 회 수	76,258	155,671	79,413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350	1,350	-
일반회계 전 입 금	24,160	24,160	-	재무활동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-	-	-
			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2,310	2,310	-
					예치금	4,722	84,135	79,413
				기본경비	5	5	-	

[2026년 지출계획 세부 변경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	비 고
합 계	285,101	364,514	79,413 (1129.3%)	
중소기업 금융지원	278,064	278,064	-	
중소기업 직접융자	180,000	180,000	-	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96,460	96,460	-	
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54	254	-	
기금 업무대행 수수료	1,350	1,350	-	
행정운영경비	5	5	-	
기본경비(기금)	5	5	-	
재무활동	7,032	86,445	79,413 (1129.3%)	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	2,310	2,310	-	
예수금원리금상환	-	-	-	
예수금이자상환	2,310	2,310	-	
예치금	4,722	84,135	79,413	· 202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794억 1,3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**여유자금예치**를 794억 1,3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70억 3,200만원)보다 1129.3%, 794억 1,3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○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(융자계정)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용도)

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
2.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3.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4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5.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